

국민독서진흥법 제정에 대한 새로운 견해

금년은 책의 해이다.

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중요한 책이 인간생활에 활용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즉, 도서의 활용은 독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열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민독서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또한 그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독서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 헌법 제29조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떠난 사람이 독서를 하지 않고는 자기교육을 이룰 수 없다.

둘째 사회교육법 제11조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 전문위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민 독서교육을 사회교육 영역 중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진흥법 제16조8항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내용 중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4항에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내용 중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한 각종 법률로 국민의 독서 진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없다. 기존의 법이 실천되지 못한다 하여 법을 다시 또 한번 더 만들어 보자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독서에 대한 임무를 도서관,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독서진흥법이 제정된다면 법률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한쪽도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도서관계가 법률로 지정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주장하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도서관계가 이를 몰라서 또는 하기 싫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하고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관단체에서는 법대로 도서관계가 국민독서를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옳을 것이다. 또한 현행 도서관진흥법이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한 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차계에 이를 개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현행법으로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법대로 활성화된다면 국민독서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각종 국민독서운동은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반이란 바로 도서관, 특히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되며 이들의 완비는 국민독서운동이 도서관의 일상업무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서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완비는 국민독서진흥의 전제조건이 된다. 즉 학교도서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중에 독서가 평생 습관화되도록 독서지도를 하고 독서가 생활화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시 부연한다면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반드시 설치하고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독서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하고 사서교사가 이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각 학년마다 필독도서 목록을 지정하여 독서과목을 통하여 반드시 이를 읽어야만 그 학년을 이수하도록 장치를 한다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독서가 생활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독서의 습관화뿐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정서교육이 결여되어 있으며, 암기식 교육과 객관식 문제 풀이에 익숙해 있는 학교교육으로 인간교육이 결여되고 문장력과 이해력 및 창의성이 결여됨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에 이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받고 독서가 습관화되어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책을 찾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찾게 될 것이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숫자도 형편 없이 적고, 존재하고 있는 도서관도 빈약한 장서에 직원수의 부족으로 독서인구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독서생활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단되고 말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이웃집 드나들듯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의 수만을 가지고 말할 하지만, 있는 도서관들도 그 지역 사회 곳곳에 많은 분관, 준분관 등을 설치하고 그 외에 배본소, 기탁문고, 이동문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공공도서관의 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며, 이들은 모두 국민독서를 위한 시설이며 기능이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이 언제라도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용하게 되므로써 평생 자기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병행하여 육성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의 생활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공공도서관이 있어도 이용이 안될 것이고 학교도서관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독서교육을 실시하여도 사회에 나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다면 그것으로 독서생활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장황하게 서술한 것은 국민 독서진흥정책은 도서관 진흥정책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에서 말뿐이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독서진흥과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있는 법이라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하며 그 외에 현행 도서관진흥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서관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도서관지원법이 통과되어 구체적으로 얼마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법제화되므로써 획기적으로 도서관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윤영대/상명여자대학교 교수)